

#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2.03.01.

개정 2017.06.01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기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센터는 게임의 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의 품질관리(QA) 서비스 및 게임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과 연구를 지원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센터의 소재지는 대학의 교지로 하되,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지 밖의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.

## 제2장 센터의 사업

**제4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게임성, 기술성, 사양별 성능, 네트워크 테스트 등 게임의 품질관리 서비스 사업
2. 게임 운영지원 서비스 사업
3. 게임 관련 연구 사업
4. 게임 관련 인력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
5. 기타 게임 관련 부대사업

**제5조(이용료)** ① 센터의 이용료는 인건비, 장비사용료, 간접비, 기타비용으로 구성한다.

② 인건비는 게임 QA 및 운영에 참가하는 인력에 대한 시간당 비용이다. 인건비는 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기술테스트와 FGT로 구별하여 별도로 정한다.

③ 장비사용료는 센터 내 장비와 시설에 대한 시간당 비용이다.

④ 간접비는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며 산학협력단의 관리비용을 포함한다.

⑤ 기타비용은 2,3,4항 외로 지정되는 비용이다.

## 제3장 센터운영

**제6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센터의 운영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은 대학의 교직원 4인 이상으로 한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별도 통지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.

④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.

1. 센터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센터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8조(조직)** ①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대학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원, 직원은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 직제는 겸직가능하다. 단, 교수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업시수를 조정 할 수 있다.

**제9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센터의 계약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 및 간접비
3. 센터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료
4. 이자수입 등 센터 관련 기타 수입금

**제10조(회계 및 감사)** ① 센터의 회계와 감사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관리규정과 회계규칙에 따른다.

**제11조(센터 보안)** 센터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입구에 보안이 가능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.

**제12조(센터의 출입)** 센터의 출입은 센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직원과 행정 인력에게만 허용한다.

**제13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,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